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으로(www.prugio.com/house/2020/ansan)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하였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항
 -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서류 미 접수 시 계약포기로 간주됨)
 - ※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추가 안내 할 예정입니다. (기본 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에정)
 - ※ 서류접수 우편물 발송시 빠른 등기로 접수를 하셔야 하며 2020년 4월 23일 도착분 까지 한합니다. (등기영수증은 보관 바랍니다)
 - ※ 공급계약은 당사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ansan)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 당첨자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일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 견본주택 관람은 공급계약체결일 이후 계약자에게 통보되는 별도기간동안 진행 될 예정입니다. (공급계약일 관람불가)
 -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 추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계약일정 및 견본주택 관람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분양 상담 전화(1800-074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3.24.(화)입니다.(청약자격조건인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 단원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기간
 - 전매금지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 시점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3.24)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

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산시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경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 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

- 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ansan)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8.02.09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 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 정	2020.04.06.(월)	2020.04.07.(화)	2020.04.08.(수)	2020.04.14.(화)	2020.04.16.(목) ~2020.04.23.(목)	2020.04.27.(월) ~2020.05.03.(일)	2020.05.06.(수) ~2020.05.11.(월)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빠른 등기 우편 접수	방문접수(10:00~16:00)	빠른 등기 우편 접수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애플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번지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ansan)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동호수는 당사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ansan)에 게재 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안산시 주택과 - 11783호(2020.03.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0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최고층수 38층 10개동 총 1,714세대(조합분양 1,126세대 포함) 중 일반공급 5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46세대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7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27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46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6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3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m ²)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0311	01	49.7492	49	49.7492	22.2884	72.0376	2.9583	29.8476	104.8435	29.3172	427	42	12	115	12	181	246	14
		02	59.7615B	59B	59.7615	22.0369	81.7984	3.5536	35.8547	121.2067	33.2895	127	12	12	25	3	52	75	8
		03	72.7611	72	72.7611	24.8758	97.6369	4.3264	43.6539	145.6172	39.7353	2	0	0	0	0	2	2	
		04	84.6097	84	84.6097	25.4322	110.0419	5.0310	50.7627	165.8356	44.7840	32	3	3	6	1	13	19	4
	합 계											588	57	27	146	16	246	342	28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회지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구분	세대수		층 구분	분양가격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잔금 (30%) 입주시		
		총 세대수	층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0.09.10	2021.02.10	2021.07.10	2021.12.10	2022.05.10	2022.10.10			
49	101, 103, 104, 106, 107, 109, 110	427	11	1층	111,892,000	178,208,000	290,100,000	29,010,000	29,010,000	29,010,000	29,010,000	29,010,000	29,010,000	29,010,000	29,010,000	87,030,000	
			12	2층	113,049,000	180,051,000	293,100,000	29,310,000	29,310,000	29,310,000	29,310,000	29,310,000	29,310,000	29,310,000	29,310,000	29,310,000	87,930,000
			29	3~4층	114,244,000	181,956,000	296,200,000	29,620,000	29,620,000	29,620,000	29,620,000	29,620,000	29,620,000	29,620,000	29,620,000	29,620,000	88,860,000
			75	5~9층	116,636,000	185,764,000	302,400,000	30,240,000	30,240,000	30,240,000	30,240,000	30,240,000	30,240,000	30,240,000	30,240,000	30,240,000	90,720,000
			145	10~19층	118,988,000	189,512,000	308,500,000	30,850,000	30,850,000	30,850,000	30,850,000	30,850,000	30,850,000	30,850,000	30,850,000	30,850,000	92,550,000
			91	20~29층	121,341,000	193,259,000	314,600,000	31,460,000	31,460,000	31,460,000	31,460,000	31,460,000	31,460,000	31,460,000	31,460,000	31,460,000	94,380,000
			64	30층이상	121,958,000	194,242,000	316,200,000	31,620,000	31,620,000	31,620,000	31,620,000	31,620,000	31,620,000	31,620,000	31,620,000	31,620,000	94,860,000
59B	103, 104, 106, 107	127	8	1층	134,879,000	214,821,000	349,70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104,910,000	
			8	2층	136,306,000	217,094,000	353,400,000	35,340,000	35,340,000	35,340,000	35,340,000	35,340,000	35,340,000	35,340,000	35,340,000	35,340,000	106,020,000
			16	3~4층	137,733,000	219,367,000	357,100,000	35,710,000	35,710,000	35,710,000	35,710,000	35,710,000	35,710,000	35,710,000	35,710,000	35,710,000	107,130,000
			33	5~9층	140,588,000	223,912,000	364,500,000	36,450,000	36,450,000	36,450,000	36,450,000	36,450,000	36,450,000	36,450,000	36,450,000	36,450,000	109,350,000
			26	10~19층	143,442,000	228,458,000	371,900,000	37,190,000	37,190,000	37,190,000	37,190,000	37,190,000	37,190,000	37,190,000	37,190,000	37,190,000	111,570,000
			22	20~29층	146,296,000	233,004,000	379,300,000	37,930,000	37,930,000	37,930,000	37,930,000	37,930,000	37,930,000	37,930,000	37,930,000	37,930,000	113,790,000
			14	30층이상	146,990,000	234,110,000	381,10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114,330,000
72	108	2	2	1층	163,305,000	260,095,000	423,400,000	42,340,000	42,340,000	42,340,000	42,340,000	42,340,000	42,340,000	42,340,000	42,340,000	127,020,000	
84	105, 108	32	2	1층	185,985,000	296,215,000	482,20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144,660,000	
			2	2층	187,952,000	299,348,000	487,300,000	48,730,000	48,730,000	48,730,000	48,730,000	48,730,000	48,730,000	48,730,000	48,730,000	48,730,000	146,190,000
			7	3~4층	189,919,000	302,481,000	492,40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147,720,000
			3	5~9층	193,853,000	308,747,000	502,60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150,780,000
			4	10~19층	197,826,000	315,074,000	512,900,000	51,290,000	51,290,000	51,290,000	51,290,000	51,290,000	51,290,000	51,290,000	51,290,000	51,290,000	153,870,000
			8	20~29층	201,760,000	321,340,000	523,10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156,930,000
			6	30층이상	202,724,000	322,876,000	525,60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157,680,000

■ 공통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로 0.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진행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견본주택은 49, 59B, 84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72)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사업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시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세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8.02.09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49	59B	72	8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12	3	0	1
		서울특별시	4	2	0	0
		인천광역시	4	1	0	1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외	10	3	0	1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	0	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1	0	0
	중소기업 근로자		6	1	0	0
계		42	12	0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87	19	0	5
		일반공급(25%)	28	6	0	1
	계		115	25	0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거주지역기준	경기도(50%)	6	6	0	2
		서울시, 인천시(50%)	6	6	0	1
	계		12	12	0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2	3	0	1	
합 계		181	52	0	1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본 산출결과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산정하였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포함)될 경우

	<p>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청약자격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0 861 2105 1061">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 동호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p>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해당 세대수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세대 및 미 계약세대,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3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로 전환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2.11)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혼기간 내 주택 소유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경과 시 2순위 해당) •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만 방문접수(건본주택)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참조) • 방문접수(건본주택) 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부적격 처리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공급신청자의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발표하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및 동 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감정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 (동 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총 57세대)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에 의거 제35조제1항제6호(장기복무제대군인), 7호(군인복지기본법), 17호(장애인), 23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총액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장애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추천기관 ①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

	<p>②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③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④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p>
<p>당첨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이내 / 대상세대 총 27세대, 본 아파트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49㎡는 최소 배정 범위인 3%이내로 배정하였음)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총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p>당첨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269호(2018.05.08.)에 의거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되,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 거주 신청자가 기타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및 해당건설지역(안산시)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이내 / 대상세대 총 146세대, 본 아파트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49㎡는 다자녀 특별공급 7% 합산한 27%이내로 배정하였음)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기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p>당첨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우선공급 : 대상 주택수의 75% •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기간 중 출산한(임신 중이거나 입양을 포함)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임신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② 2순위 : 무자녀 또는 2018.12.11.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선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선정. 단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의원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서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영 업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국민 연금관리공단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체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대상세대 총 16세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별표1에 의거한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 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안산시) 거주자 우선합니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제 적용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호 나목의 청약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
 ※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한 신청자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 거주자 보다 우선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자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청약통장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 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합니다) ※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 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②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p>-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p>※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합니다.</p> <p>※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p> <p>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p> <p>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p> <p>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p> <p>※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 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p> <p>•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p>
--	--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시 추첨제 100%로 청약 접수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신청자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p>
<p>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20.01.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시에는 규칙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에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 자녀는 미혼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체류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p>④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계산)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4.06.(월) (청약Home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홈" 검색) •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
일반공급	1순위	2020.04.07.(화) (청약Home :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홈" 검색)
	2순위	2020.04.08.(수) (청약Home : 08:00~17:30)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애플앱스토어 앱은 향후 이용 가능)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청약 불가능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특별공급 약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잔수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홈 페이지에서 청약통장잔수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인터넷청약(청약 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90일 초과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90일 초과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기관추천 (일반)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약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필수)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주민등록표초본	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주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 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자격 사전관리」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민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민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등·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0.04.14.(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04.27.(월) ~ 2020.05.03.(일) 7일간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건분주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등·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분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등·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

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 2020.04.14.(화) ~ 2020.04.23.(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 2020.04.1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거주신청자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 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중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기되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 가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1.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서류 제출

구 분	제 출 기 간	제 출 장 소	제 출 방 법
당첨자	- 2020.04.16.(목) ~ 2020.04.23.(목) 8일간	-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견본주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	- 빠른 등기 우편 제출
예비입주자	- 당사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ansan)를 통해 안내 예정		

-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관람은 불가 합니다. (서류 미 접수시 계약포기로 간주됨)**
- ※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추가 안내 할 예정입니다. (기본 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에정)
- ※ 서류접수 우편물 발송시 **빠른등기로 접수를 하셔야 하며 2020년 4월 23일 도착분까지** 한합니다. (등기영수증은 보관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ansan)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천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접수 및 추천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유의사항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계약시 지참)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계약시 지참)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90일 초과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90일 초과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사실확인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추가 제출)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 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선정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으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계약시 지참)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계약시 지참)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 2. 수도권 외 6개월 / 3.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7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통보후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 약 기 간	장 소	비 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4.27.(월) ~ 2020.05.03.(일) 7일간, (10:00 ~ 16:00)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견본주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	당첨자 계약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별 / 시간을 지정한 예약제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며,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임

-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동별 계약 일정 및 시간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 견본주택 관람은 공급계약체결일 이후 계약자에게 통보되는 별도기간동안 진행 될 예정입니다. (공급계약일 관람불가)
-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 됨.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 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 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반환해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 신청 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상, 기반시설 및 혐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라 부활되지 않습니다.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해당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분양권 전매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 및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공급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부적격 당첨자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입금증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국민은행	626401-01-528913	원곡연립1단지주택재건축조합(외1)
중도금/잔금	계약체결시 세대별로 가상계좌 부여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 형태로 부여되며 모계좌(국민은행 626401-01-528913, 예금주 : 원곡연립1단지주택재건축조합(외1))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108동 1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81301홍길동)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 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

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 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담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담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이자 후불제이며,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전일 납입일까지의 대출이자(단, 사업 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단,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 개시일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단, 사업주체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 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담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당 사업지는 비조정지역으로 세대당 2건(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단,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단,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및 복리시설

- 생활지원센터(1개소), 경비실(2개소), 시니어클럽(1개소), 주민공동시설(독서실1개소(남/여 구분 각1개실), 주민회의실 1개소 등),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GX클럽(런닝머신 및 웨이트 운동기구 포함) 1개소, 골프클럽(연습타석 및 퍼팅연습장, 스크린골프 1개실 포함) 등, 어린이집(1개소), 작은도서관(1개소), 어린이놀이터
- ※ 부대 및 복리시설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상기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과 고객 간에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추후 관람일 개별 통보 예정)

■ 추가 선택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①발코니 확장	②확장평면옵션		③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④현관중문	⑤침실2 or 3 불박이장	⑥거실주방 바닥타일			
	금액	구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49	9,400,000	침실1,2 통합형 옵션		2,600,000	2,300,000	1,900,000	900,000			
		김치냉장고장 무상선택	김치냉장고장	없음				2,500,000	2,000,000	900,000
			키큰장							
59B	12,500,000	침실1 불박이장 옵션	TV장	2,000,000	2,500,000	2,000,000	900,000			
			의류수납장							
		침실3 드레스룸 옵션(포켓도어)		2,300,000				2,000,000	900,000	600,000
72	16,000,000	침실1 불박이장 및 유리 슬라이딩도어 옵션	TV장	2,900,000	3,700,000	2,000,000	900,000			
			의류수납장	2,900,000						
84	16,500,000	침실1 불박이장 및 유리 슬라이딩도어 옵션	TV장	3,500,000	3,900,000	2,000,000	900,000			
			의류수납장							
		히든키친+클린존	의류수납장	3,100,000	3,400,000			1,000,000		
			의류관리기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외부창호(거실, 침실),전동식 빨래건조대, 외산 주방도어, 거실 우물천정, 대형 아트월타일(600*1200, 72, 84타입만 적용)

※ 확장 선택형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등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설치되는 외산도어의 경우, 동등이상의 브랜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9타입의 경우 김치냉장고장(무상) 선택 시 전기오븐(유상옵션)은 쿡탑 하부에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59타입에 적용되는 침실3 드레스룸 옵션은 타입에 따라 포켓도어 혹은 일반적인 침실 여닫이도어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옵션가가 달라집니다. (59A, D타입은 여닫이도어 / 59B, C타입은 포켓도어)

※ 침실1 불박이장 옵션 중 TV장 선택시 일부 TV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오픈닝사이즈 59타입(W:1200, H:900) 72타입(W:1000, H:980), 84타입(W:1250, H:980)

■ 추가 선택품목 - 가전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품목	업체명	모델명	공급금액
전타입	빌트인 전기오븐	SK매직	EON-B450M	450,000
			EON-B401SA	650,000
	하이라이트 쿡탑	SK매직	GRA-BH301H	590,000
			GRA-BI300H	820,000
84(히든키친+클린존) 의류관리기 선택시	의류관리기	LG전자	S3HFB	1,250,000
			S3DFB	1,290,000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금	국민은행	626401-01-528942	(주)대우건설
추가 선택품목(옵션)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진행과 관련 사항 및 계약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계약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계약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국민은행 626401-01-528942]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추가선택품목(옵션)의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부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계약금 계좌와 분양대금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시 개별 납부)
 - 추가 선택품목(옵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방문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및 기존 선택품목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은 확장 계약 시 추가선택이 가능한 항목이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기 하합니다.
- ※ 하이브리드쿡탑 계약 시 쿡탑 사양에 따라 매입사이즈가 변경되며 가구 깊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수급 여건에 따라 시공 시 동일사양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1. 입주예정일 : 2023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할 예정)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 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2.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입주지정 개시일 1~2개월 이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배 공사, 도장 공사, 가구 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 기타 잡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 #### 3. 입주 시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용부분(공동)

- 본 사업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은 2019년 12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기준 도면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하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 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발내용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는 직각주차와 접해있는 차로의 법규기준이 6m 이상이며, 우리 사업의 지하주차장 차로폭은 6~7m이며, 주차장 출입구 높이의 법규 기준은 우리 사업의 인허가 시점 기준으로 2.3m이며, 우리사업은 해당 법규기준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본 사업이 준공이 되기 전 토지의 용도 등 조성계획 전반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원곡초등학교이며, 중학교는 현재 서부중학교(원곡중, 관산중, 선일중 등)에 배정 예정이며, 중학교 입학은 동일학군 내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중학교 학교군은 매년 설정, 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청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자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 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타상형과 판상형이 혼합되어 있으며,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 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은 분양이후에 해당 관청(사업승인권자)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의(공사)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 성능, 제품의 사양은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특기사항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는 실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영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 상에 표현된 아파트 단지 주변 상황(옹벽, 도로, 철도, 근린공원, 주변건물 등), 개발계획 예정도, 단지인근 도로 완충 녹지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실제와 다르거나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일부는 준공 전 현장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하며, 준공 후 A/S센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부분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한 단지의 개발 계획에 따라 대지 경계의 옹벽높이 및 단지 주출입구 주변의 동선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와 인접한 기반시설과(공공공지, 완충녹지, 학교용지 등)의 레벨차이로 조경석 쌓기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주변 계획레벨보다 대지레벨이 낮아 일부동의 경우 저층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도로폭등의 제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후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경계펜스는 지역 규정,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외관디자인 등 특화설계 추진 및 경관/건축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결과에 따라 아파트 및 부대건물,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 마감재는 분양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분양 홍보물, 모형 등은 확정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비확장 시 세대 외부 난간은 철재로 시공되며 유리난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지 주변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판매시설 등) 변경에 따라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안·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산벽 또는 옹벽으로 계획되어지며, 설치위치는 실시공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관청 지침에 따라 펜스 및 부문주 등의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조정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정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또는 저소음포장 등) 설치로 인하여 저층세대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주동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소음,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내 구조물 및 시설물, 식재의 훼손 우려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동등,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등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각 시설물의 에어컨(실외기), 설비시설 및 쓰레기 수거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철도, 통행로, 공항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등)에 따라 인접된 단지시설등의 계획레벨,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문주,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정화조, 배기탑,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의 일부제한 및 냄새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소방서 협의 결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에어매트 설치위치에는 수목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소방법의 의거, 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규정상 수목이 식재가 불가하여 일부 지피류가 식재될 예정이며,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될 실외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제한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104,106,110동에 인접하여 문주가 설치되어 1~4층 세대의 조망 및 일조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110동은 근린생활시설 인접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하여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의 외관 디자인 및 색채, 옥탑장식물, 경관조명 등은 설계 및 안·허가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 구조물의 형태, 규격, 마감재종류는 실시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혼합으로 마감되며, 석재와 페인트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안·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구조물은 모형, 조감도 등에 사용된 이미지와 모양, 개소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공부의 창호사양, 위치, 크기 변경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상부도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의 색채는 모형 및 CG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차량출입구는 아파트 입주인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인 또는 사용자와 공용으로 사용되며, 주차장 구역은 별도 구획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상층에서는 각 동 하부 필로티 또는 각 동 출입구를 통해 동별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으로 시공되고,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호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위치와 배치계획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 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레벨차로 인하여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고,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세대는 개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의 내부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 비품 및 운영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골프클럽, 작은도서관 등 부대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하헬름,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옥상에는 조경 관련 시설물이 반영될 시, 이로 인한 최상층 세대의 소음, 냄새, 사생활 간섭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들 시공부위에 천장들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PC + RC 복합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과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지하주차장 차량통행 유효통과높이 : 2.3m)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헬름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헬름,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헬름, 우수조, 정화조 등 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 (조적벽, 콘크리트 벽)는 초벌미장 시공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 미장은 엘리베이터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일부 동이 세대가 아닌 필로티 및 피트(PIT)공간 또는 부대시설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공간을 제외한 최저층을 저층우선 세대로 배정하였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예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6~9지점 지지로 시공합니다.
-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세대로 유입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에는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36개월)동안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169g 이상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건물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 마감재는 경관/건축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단위세대 부분(공동)

- 본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소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사업시행 변경인가 기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면적 산정 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 다릅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 시 타일 및 인조대리석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창호의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내부에 설치된 분전반의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선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사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해당 주택형에 한함)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정은 천정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 무상업선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파우더장, 주방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FAN이 설치됩니다.
-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욕실 내 위생기구, 수전 및 액세서리의 위치는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천정형 환기설비가 적용되며 세대 내 디퓨저 위치는 본 시공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보조주방 천정 부위에 세대 내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설치되며, 천정을 설치 시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장비 가동 시 작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용 장비, 덕트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발코니 천장 높이가 견본주택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 난간의 사양(디자인, 크기,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열재 시공은 미리 나누기도를 작성한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시공합니다.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70~80%로 시공하거나 부착강도 39.2N/cm²(4kgf/cm²) 준수하도록 시공합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에서 지정한 일부세대는 공사기간 중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세대 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다음을 확인합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 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9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 시 실외기실 도어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면적변경, 구조변경 또는 관련법령 저촉사항 등이 아닌 세대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 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전기기기(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구간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선택형 사항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반분양 세대와 조합 세대의 마감 사양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침실,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주방가구 중 일부가 외산도어로 시공되며 주변 가구마감재와 이색이 질 수 있습니다.
- 72, 84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 시 대형 아트월타일(600*1200)이 설치되며, 비확장 시 설치되는 타일과 다릅니다.
- 주방발코니 창호 쪽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 배치 시 창호개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경기도 안산시와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의 요청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의 약식표기는 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에는 반드시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기반시설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 입주 후 주변시설 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 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자(대우건설)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136,795,890,000	제 01212020-101-00008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함.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함. 이하 같음.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함. 이하 같음.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함.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함.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함.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 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 중지 통보 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함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 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함.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음.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함.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봄. 이하 같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 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음.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함.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음. 이하 같음.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및 정보통신
상 호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유탭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금정엔지니어링(주)
금 액	3,655,399,900원	946,188,182원	1,360,0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대우건설
법인등록번호	131471-0018412	110111-2137895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66, 303호(선부동, 신한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 홈페이지 주소 : www.prugio.com/house/2020/ansan

■ 주택홍보관 및 문의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번지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견본주택

■ 분양문의 : 1800-0742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0년 03월 24일

시행사 :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주)대우건설